

「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」 일부개정지침

□ 개정이유

-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 후 퇴직, 졸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관련 지침 정비 필요
-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 시점 이후 학기말에 최종적인 취업상황에 대한 확인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악용 방지 및 실효성 제고
-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여 제도 남용 방지

□ 주요 내용

-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의 대상에서 ‘초단시간근로자’ * 제외(제2조제2항)
- 학기 중 퇴직 혹은 졸업 취소시 통보의무 신설 및 미통보시 성적 재산정(제4조제2항)
- 학기말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채용확인서류 제출(제4조제3항)
-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를 재학 중 1회로 제한(제4조제4항)

* 초단시간근로자: 「근로기준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
□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

- 2023. 11. 16. ~ 24. 학내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
- 2023. 12. 6. 학사운영위원회 심의
- 2024. 2. 15. 학사운영위원회 재심의
- 2024. 2. 지침 공포
- 2024학년도 1학기 ~ 시행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조(정의) 제1조에 명시된 조기취업자는 졸업예정학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① 제1조에 명시된 조기취업자는 졸업예정학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을 말한다.</p> <p>② 「근로기준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는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</p>	<p>- 항 신설</p> <p>- 초단시간 근로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제외</p>
<p>제4조(처리절차) 제3조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(학생) 졸업 신청 및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(채용확인서류 첨부)</p> <p>② (담당 교원)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평가 시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4조(처리절차)</p> <p>① 제3조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학생) 졸업 신청 후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(채용확인서류 첨부)</p> <p>2. (담당교원)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평가 시행</p> <p>② 조기취업자는 학기 중 퇴직 혹은 졸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담당 교원은 인정된 출석 및 시험성적, 과제점수 등을 취소하고 해당 학기의 성적을 재산정한다.</p> <p>③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재직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.</p>	<p>- 항 신설에 따른 항번호 변경</p> <p>- 퇴직 혹은 졸업취소시 교원 통보 및 성적 취소 근거 마련</p> <p>- 학기말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</p> <p>- 재학 중 1회 적용 제한</p>
<신 설>	<p>부 칙 <제0000호, 2024. 00. 00> 이 지침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</p>	

[학내 의견수렴 결과]

○ 별도 의견 없음

[법학연구소 자문 결과]

○ 별도 의견 없음

□ 일부개정지침(안) 전문

「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」

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지침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85조(성적처리) 및 「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」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제1조에 명시된 조기취업자는 졸업예정학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24.2.16.]

② 「근로기준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는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[본조신설 2024.2.16.]

제3조(출석 및 성적처리기준) ①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하여서는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, 대체과제,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, 관련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한다.

제4조(처리절차) ①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1. (학생) 졸업 신청 후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(채용확인서류 첨부)

2. (담당 교원)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[본조신설 2024.2.16.]

② 조기취업자는 학기 중 퇴직 혹은 졸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담당 교원은 인정된 출석 및 시험 성적, 과제점수 등을 취소하고 해당 학기의 성적을 재산정한다. [본조신설 2024.2.16.]

③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재직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24.2.16.]

④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.[본조신설 2024.2.16.]

부 칙<제2호, 2022.8.23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3호, 2024.2.16.>

이 지침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